# 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43호

## 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| 제재대상 | 내용(회사명, 성명 등) |
|---|---|
| 기 관 | 나무자산운용㈜ |

## 2. 조치내용

□ **(과징금 부과)** 580만원

## 3. 조치이유

### 가. 지적사항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○ 나무자산운용㈜은 '22.1.19. 펀드를 이관받고, '22.5.23. 동 펀드 차입금을 현물로 상환하면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'23.1.3. 지연보고하였으며,

- '22.8.30. 고유계정으로 보유 중이던 전환사채·신주인수권부사채권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로 권리가 소멸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'23.1.3.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

### 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, 제429조 제4항 제1호